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(양금희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4855 발의연월일: 2020. 11. 2.

발 의 자:양금희·김영식·지성호

김기현 • 유의동 • 서일준

유창현 • 유두현 • 김예지

태영호 • 이주환 • 송언석

전봉민 의원(1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산업재산권 분쟁 시 심판 또는 소송을 통한 해결은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어 중소기업 등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함. 따라서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인 해결 수단임에도 아직은 활용실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.

심판 단계에서 조정제도가 도입된다면 소송 전 분쟁의 조기 해결이가능하고 침해소송이 결부된 경우에는 소송까지 종결할 수 있으나, 현재는 '심판-조정 연계제도'의 부재로 분쟁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서만조정절차가 진행되고 있음.

이에 「발명진흥법」 '심판-조정 연계제도' 도입에 맞춰 심판사건을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, 더불어 심판사건의 기록도 조정위원회에 반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분쟁조 정위원회 조정제도를 활성화하려는 것임(안 제164조의2 및 제217조제1 항제1호의2 신설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양금희의원이 대표발의한 「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안」(의안번호 제4853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 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 여야 할 것임.

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

특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6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64조의2(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회부) ① 심판사건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심판장은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해당 심판사건의 절차를 중지하고 결정으로 해당 사건을 「발명진흥법」 제41조에 따른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(이하 "조정위원회"라 한다)에 회부할 수 있다.

- ② 심판장은 제1항에 따라 조정위원회에 회부한 때에는 해당 심판 사건의 기록을 조정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.
- ③ 심판장은 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가 조정 불성립으로 종료되면 제1항에 따른 중지 결정을 취소하고 심판을 재개하며, 조정이 성립 된 경우에는 해당 심판사건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.

제217조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의2. 제164조의2제2항에 따른 조정을 위하여 특허출원·심사·특허 취소신청·심판·재심에 관한 서류 또는 특허원부를 반출하는 경 우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심판사건의 조정위원회 회부에 관한 적용례) 제164조의2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일 현재 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.
제3조(다른 법률의 개정) 실용신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33조 중 "제154조부터 제166조까지"를 "제154조부터 제164조까지,
제164조의2, 제165조, 제166조"로 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현 행 <신 설>	개 정 안 제164조의2(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회부) ① 심판사건을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심판장은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해당 심판사건의 절차를 중지하고 결정으로 해당 사건을 「발명진흥법」 제41조에 따른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(이하 "조정위원회"라 한다)에 회부할수있다. ② 심판장은 제1항에 따라 조정위원회에 회부한 때에는 해당심판사건의 기록을 조정위		
제217조(특허출원 등에 관한 서	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. ③ 심판장은 조정위원회의 조 정절차가 조정 불성립으로 종 료되면 제1항에 따른 중지 결 정을 취소하고 심판을 재개하 며,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해 당 심판사건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. 제217조(특허출원 등에 관한 서		

류 등의 반출 및 감정 등의 금지) ① 특허출원·심사·특허취소신청·심판·재심에 관한서류 또는 특허원부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외부로 반출할 수 있다.
1. (생략)
<신 설>

2. ~ 4. (생략)

②·③ (생 략)

류	등의	반출	및	감정	등의	금
지)	1					

- 1. (현행과 같음)
- 1의2. 제164조의2제2항에 따른 조정을 위하여 특허출원·심 사·특허취소신청·심판·재 심에 관한 서류 또는 특허원 부를 반출하는 경우
- 2. ~ 4. (현행과 같음)
- ② · ③ (현행과 같음)